

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

제정 2019년 12월 20일 조례 제1763호
전부개정 2022년 5월 13일 조례 제1993호
일부개정 2024년 6월 25일 조례 제217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을 따른다. <개정 2024. 6. 25>

1. 삭제 <2024. 6. 25>
2. 삭제 <2024. 6. 25>
3. 삭제 <2024. 6. 25>
4. 삭제 <2024. 6. 25>
5. 삭제 <2024. 6. 25>
6. 삭제 <2024. 6. 25>
7. 삭제 <2024. 6. 25>
8. 삭제 <2024. 6. 25>

제3조(적용범위)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조(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

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

대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)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「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
제7조(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)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아동학대 예방의 날)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9조(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, 경찰서, 법률기관, 아동보호전문기관,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사례회의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사례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피해아동 등의 지원사업)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환경 조성 및 분리보호에 따른 가정복지 지원
2. 피해아동의 신체적·심리·정서적 안정을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의 지원

제11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
2.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
3.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4.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
5.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
2. 피해아동 생활지원
3. 상담 및 치료
4. 교육 및 정서지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6. 25>

제13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

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

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(포상 등)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사업 활성화 및 피해아동보호 지원 등 아동권리 증진에 대해서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및 종사자·자원봉사자 등에게 「오산시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5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비밀준수의 의무)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〈2022. 5. 13 조례 제1993호 전부개정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4. 6. 25 조례 제2175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